

帖 裏 考

金 正 子

<目 次>	
I. 序 論	C. 色
II. 歴史的 背景	D. 材 料
III. 帖裏를 입은 動機	E. 形 態
IV. 衣 服	V. 結 論
A. 着用者	參考文獻
B. 用 途	

I. 序 論

이 論文은 朝鮮時代의 帖裏에 대하여 考察한 것이다. 帖裏에 대한 名稱은 우리나라 文獻에서 貼裏, 帖裡, 帖裏, 天翼 등으로 表記되고 있으며 한글로는 철릭, 털릭, 털닉, 철닉, 철록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나 다 같은 말이다. “帖裏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북 아세아의 호족들의 일반적인 의복인 튜닉(Tunic)계통이다. Tunic을 漢字로 表記하려면 漢文의 發音상 천익(天翼: Tiany)가 된다. 地方에 따라 “튜닉”을 “츄닉”이라고도 발음하기도 하는데 “츄닉”의 漢字 發音을 “츄니”로 발음 되기도 하여 “chanyu”(擔楡)라고 中國에서 表記되기도 한다. 天翼은 (Tunic)이라는 발음에서 온 것이고 첩리는 “chanyu”라는 발음에서 온 것이다” 하였고 “高麗時代의 質孫은 便服으로서 「衣冠을 一色으로 한다」는 蒙古語가 “Zisun”이라 하였다.” 우리나라

에서 帖裏를 처음 입은 때는 高麗時代로 安珮의 肖像畫와 高麗歌詞인 鄭石歌로 證明이 되고 있는데 이는 中國 元의 質孫이 들어와 입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 이 보다 高句麗 古墳 龕神塚 前室西壁에서 보이는 袍와 雙楹塚 夫婦의 袍가 帖裏인 것 같으나 앓아 있으므로 帖裏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朝鮮時代에 와서 帖裏는 活動하기 便利하기 때문에 武士의 戎服으로, 王의 便服으로 또는 士大夫와 官吏들이 입는 冠服속의 中衣로 입게 되었고 壬辰亂時에는 文·武官의 公服으로 입게 되었다. 帖裏는 色과 織物 形態 등에 差等を 두면서 士庶人의 燕居服으로 皂隸의 禮服으로 또는 巫人, 樂人, 舞人 및 襖衣와 女人, 兒童에 이르기까지 多樣하게 着用되었다. 色과 材料는 점차 사치해져서 그 때마다 여러가지 制度와 禁令으로 階級과 身分에 따라 區別하려 했으나 시행되지 못했으며 소매와 치마도 점점 길고 넓어졌다. 이는 文官을 武官보다 낮게 생각하는 社會意識에서 制度上으로 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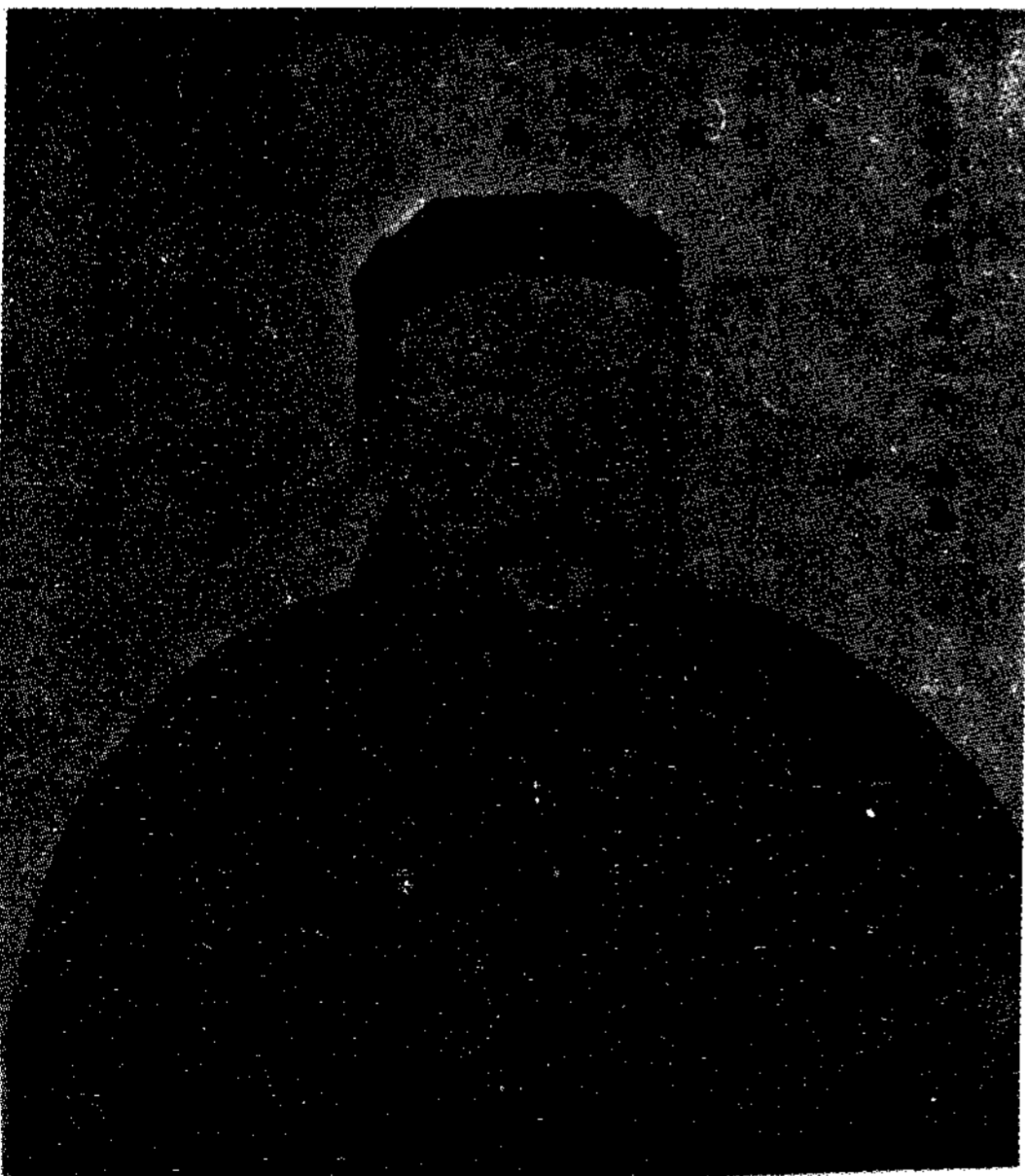
1) 劉頌玉 「出土服飾」 韓國의 服飾, 韓國文化財保護協會, 서울: 1982, 257p.

2) 金東旭 「韓國服飾史」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9, 47p.

官보다 길고 넓은 帖裏를 입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생긴 心理的 緣由라 생각 된다. 帖裏의 材料는 季節에 따라 綿, 麻, 紵, 紬, 紗, 緞 등이 있으며 單衣, 袂衣, 襦衣가 있다. 戎服의 構成을 보면 靑帖裏에 紅廣帶를 띠고 虎鬚를 꽂고 纓子を 裝飾한 朱絲笠을 쓰며 木靴를 신는다. 附屬物로는 손에 藤策를 쥐고 띠에는 兵符를 차고 허리에는 環刀를 차며 어깨에는 활을 넣는 筒筒 등을 갖추는데 本稿에서는 衣服만을 다룬다.

II. 歷史的 背景

帖裏가 처음으로 着用된 時期는 高麗時代로 본다.³⁾ 이는 高麗 忠烈王때 學者인 安珣이 平頂巾을 쓰고 質孫을 입고 있는 肖像畫(1243~1306)⁴⁾가 있고 또 그 形成時期를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 最初의 記錄으로 高麗歌詞인 鄭石歌에 「모쇠로 털릭을 마라나는」의 털릭에서이다. 歷史적으로 볼 때 高麗時代는 中國 元과의 交流가 많았



〈사진 1〉 安珣의 肖像畫

고 元의 强要에 의하여 王室 以下 兩班 階級에서 施行해서 元服을 입은 것으로 보아 上流層에서 입은 것으로 思料된다.

당시 元은 王이하 大臣 近待 樂工 下庶人에 이르기 까지 質孫을 많이 입었는데 天子는 朝服과 公服으로 입었는데 11種이나 되며 集會 參席 時 爵位 있는 사람은 同一色으로 입는다⁵⁾고 한다. 質孫은 辮線襖子로도 表記된 것 같은데 말을 타거나 활을 쏠 때 입고 일반 官吏가 입는다⁶⁾고 되어 있다.



〈사진 2〉 〈元의 辮線襖子〉

「事林廣記」中 元人 馬射囚 中國古代服飾研究 393p.

明代에 와서는 質孫과 腰線襖子 또는 刻期로 記載되어 있으나 刻期나 腰線襖子는 허리에 주름이 있어 質孫과는 그 構成이 類似하면서 다르다. 刻期라는 冠服은 宋나라때 快行親從官을 爲해 만든 것인데 明初에 刻期라고 불렀다. 方頂巾을 쓰고 鷹鷄花를 胸背에 그린 腰線襖子를 입었다⁷⁾는 刻期는 宋의 옷이다.

朝鮮時代에 와서는 많은 記錄이 있는데 朝鮮 王朝實錄에 世宗 7年에 王이하 隊仗 侍衛軍士, 別監, 兩班, 工商賤隸, 樂工에 이르기까지 上下 넉리 입었다.⁸⁾

帖裏는 活動하기 편리하므로 戎服이 되었고 形態가 비슷한 深衣가 中古時代 文士들의 便服으로 着用되었고 또 端宗朝 世祖朝 成宗朝 수차

3) 金東旭, 高福男, 「出土 朝鮮時代 遺衣의 服飾史的 研究」服飾學會誌 二號, 1978, 19p.

4) 「韓國肖像畫」國立博物館, 1979.

5) 沈從文 編著, 「中國古代服飾研究」, 商務印書館, 388p.

6) 上掲書, 393p. 367p.

7) 「明史 I」: 新文豐出版公社 0696p. 刻期冠服宋置快行親從官, 明初謂之刻期, 冠方頂巾衣胸背鷹鷄花腰線襖子. 諸色闊區絲條.

8) 「朝鮮王朝實錄」, 國史編纂委員會, 1973.

에 걸쳐 王이 使臣에게 下賜하면서 널리 愛用된 것 같다.

宣祖年에는 "大小朝官들이 帖裏를 입은지 7년이 지나면 上下 區別이 없어서 다시 冠帶를 베를 議論을 여러번 발의했다가 중단 되었으니……"라는 記錄은 文武官의 公服으로 壬亂時에 着用된 것을 示唆해 준다.

宣祖30年 "임금께서 입으시는 戎服은 바로 中國에서 입는 快子인데……"는 具軍服을 말하는 것으로 이 때 처음 입기 시작하는데⁹⁾ 이는 帖裏가 너무 넓고 길어서 거치장스러웠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同王25年에는 "武士가 寬袍 濶袖를 입으면 엄중 처벌 할 것"이라 命하고 仁祖2年에는 "戎服을 革罷하기를 命하소서 하니……戎服은 하는 것은 「母亡在莒之意」에서 이니 일이 많은 때 이와같이 급한 일을 하지 말라"하여 戎服으로 帖裏가 계속 着用됨을 알 수 있다. 帖裏은 仁祖14年 丙子胡亂後까지 그대로 입다가 仁祖25年에 이르러 비로소 中國의 制度에 따라 黑團領 즉 冠帶를 着用하였다.

英祖代에 著述한 「礪溪隨錄」을 보면 公服을 입는 者는 公服속에 帖裏와 廣帶를 한다"로 官服속의 中衣로 着用되었음을 안다.¹⁰⁾ 그러나 英祖2年에는 "武臣들은 반드시 戎服위에 冠袍를 입게 했는데 近來에는 그렇지 않다……"하였고 또 同王19年에는 "武臣들이 帖裏를 입으려 들지 않고 꼭 直領을 입으려 하는데…… 다시 한번 경계를 내리소서"하였으며 同王26年에는 "近來 武臣들이 處身을 文臣과 같이 하여"라 함은 帖裏의 社會的 格下라고 본다.

또 正祖 17年에는 "帖裏를 버리고 戎服을 定하는 것이 마땅하다……自隸 무리들의 帖裏 소 매까지도 그들을 따라 넓어져 거의 全幅의 비단을 사용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지나친 낭비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自隸의 帖裏를 힘써 짧고 좁게 만들도록 한다면……"라는 記錄은 길고 넓은 帖裏는 기능적으로도 적당치 못하여 軍服으로 統一하려는 論議를 하게끔 되었다고 본다. 그밖에 帖裏는 色과 材料와 形態도 여러 王朝에 걸쳐 論議되다가 朝鮮末 高宗32年 西歐式服裝으

로 바꾸도록 하는 勅令과 함께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Ⅲ. 帖裏를 입은 動機

帖裏를 입는 時期는 高麗時代로 추측하는 것은 帖裏의 前身은 元의 독특한 質孫이고, 高麗末 學者인 安珣의 肖像畫와 高麗歌詞에 그 증표가 나와 있기 때문이다. 高麗는 一世紀동안 元과의 服屬關係를 맺으며, 制度와 法俗을 많이 따랐고, 王室以下 貴族·兩班階級에서는 向元心에 사로잡혀 尙先하여 蒙古風을 좇는 수치스러운 風潮였다. 忠烈王은 世子로 元에서 돌아올 때 辮髮胡服으로 入國하여 많은 사람들을 탄식케 하였으며 辮髮하지 않은 朝臣들은 꾸짖어 쫓게 하였고 즐겨하지 않은 翰林院學士들까지 說諭하여 開剃하게 하였다. 당시 質孫이 元에서는 一色服으로 王이하 下庶人까지 區別없이 입었으니 우리나라에서도 君臣을 비롯하여 上流層에서 많이 입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31代 恭愍王은 復舊的인 中興政治로 開剃辮髮의 蒙古風을 고치고 改革復興의 治를 하였다.

그러나 帖裏는 朝鮮時代 世宗代에 와서도 王世子를 비롯하여 平民까지 입게 된 것은 그럴만한 理由가 있기 때문이라 본다.

첫째는 窄袖의 上衣와 넓은 치마가 붙어 있는 옷의 構成面에서 볼 때 形態가 活動하기에 간편하기 때문에 王의 便服이나 말을 타고 활을 쏠 때 입는 戎服 또는 冠服속의 中衣와 使臣服 服禪祭 服女人 服兒童服으로 용이하게 수용된 것으로 본다.

둘째로는 心理的인 側面에서 많이 입었다고 보는데 帖裏는 明皇帝가 우리나라 王에게 또 우리나라에서도 王이 世子나 國內外 使臣에게 수차에 걸쳐 下賜品으로 내렸으며 儒生과 進士들이 着用하였던 深衣가 帖裏와 비슷했기 때문에 文官과 같아지려는 心理에서 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한때 文官이 입는 直領과 文官이 입는 폭넓고 긴 모양의 帖裏를 애써 입은 사실을 알 수 있다.

9) 정혜영 「李朝時代의 軍服에 對하여」 이대대학원 석사논문 1980, 3p.

10) 柳馨遠 「礪溪隨錄」

셋째는 美的인 側面을 들 수 있는데 上古時代로부터 朝鮮時代に 이르기까지 貴人들의 옷의 형태나 衣次를 볼 때 풍성한 모양인데 帖裏는 형태가 넉넉하고 色과 織物의 種類로 자기의 身分을 나타내기에 손색이 없는 옷으로 王이나 士大夫의 옷으로 입었고 또 平民도 兩班과 같은 옷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옷으로 넓고 길게 하여 입은 것 같다.

IV. 衣 服

A. 着用者

高麗時代に 들어온 帖裏를 입은 사람은 記錄이 없어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朝鮮時代に 와서는 戎服으로서 武人 뿐 아니라 王 王世子 使臣 士大夫 工·商 賤隸에서 樂工 舞人 巫人 婦女子 家僮에 이르기까지 입었다.

王이 帖裏를 着用한 事實은 明皇帝가 世宗王에게 黑錄暗花貼裏 鷲哥綠花貼裏 柳青素貼裏를 下賜한 事實과 成宗 6年 宣慰使 議政府舍人 裴孟厚에게 王이 입던 紫紬帖裏를 下賜한 일 그리고 宣祖 30年 王의 戎服制에 對한 論議등으로 알 수 있고 王世子가 帖裏를 着用한 記錄은 端宗 1年 世祖에게 藍段子帖裏 朱黃段子帖裏 柳青紬帖裏 鴨頭綠紬帖裏 灰色紬帖裏를 내린 일과 中宗 33年 世子の 戎服 色相에 對한 論議에서 雅青色으로 決定된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帖裏가 文·武百官에게 着用되었음은 世宗朝에서부터 高宗朝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나타나는데 堂上 堂下를 區別하기 爲하여 色·織物의 種類와 袖와 裳의 升과 幅과 長이에 대한 禁令을 내린 事實을 本稿의 色 材料 形態에서 볼 수 있다.

內外使臣이 입은 記錄은 端宗1年 金宥等에게 綿紬帖裏 白綿布帖裏를 그리고 世祖 1年 “使臣 高黼 權域에게 襦帖裏를 내린 사실로 알 수 있다. 또 世宗 31년에는 各殿 各宮의 別監과 典樂署의 樂工은 平時에는 直領挾注音帖裏를 입고……서울 안 上林園別監과 隊仗 隊副 武士 庶人和 地方

의 日守兩班 工 商 賤隸등은 共同으로 直領挾注音帖裏를 입는다”는 記錄에서 一般平民에 이르기까지 上下 區別없이 帖裏를 입었음을 알게 된다 「樂學軌範」¹¹⁾과 正祖大王의 陵行圖와 高宗朝 外宴 및 內宴 屏風圖에서는 樂工과 舞人들이 帖裏를 입고 있으며 申潤福의 성주굿에서 巫堂이 武官의 戎服차림으로 笠飾없는 朱笠을 쓰고 雜神을 좇고 있다. 그뿐 아니라 世祖 2년에는 韓確의 家僮(어린이)에게 柳青紬袂帖裏 黑麻布帖裏 白苧布帖裏를 내리고 成宗10年 中國人 두 어린이에게 紅綿布襦帖裏와 灰色綿布襦帖裏를 내린 것으로 어린이까지 입었음을 알게 되며 忠北 淸原郡 外南里에서 出土한 順天 金氏의 흰 모시 철릭과 갈색 겹 누비 帖裏으로 女人도 帖裏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다.¹²⁾

B. 用 途

帖裏의 用途에 對하여 經國大典에 “당시에는 帖裏가 一般 士庶人의 燕居服이었던 것이 直領과 道袍가 서로 이어져 이 地位를 代身하게 되었고 언제부터인지 武弁의 便服과 隸의 禮裝으로 局限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袍服에 비하여 經捷하기 때문에 壬辰 丙子 兩亂에는 한참동안 文武를 通해서 公服이 되고 또 平時에 있어서는 主上의 行幸에 陪從할 때에는 侍衛의 臣이 모두 戎服으로 着用하였다.”¹³⁾하였고 「五洲衍文長散稿」에는 “武弁을 막론하고 戎服이라 하여 公務服에만 입고 奴婢로서 役이 있는 者는 항상 그것을 上服으로 입어 士庶가 通用하고 있다”고 하였다.

世宗28年 謝恩使 柳守剛이 가져온 明의 賜與服인 王常服 一襲中에 裏衣로서 袴襪과 함께 帖裏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王뿐 아니라 諸臣들의 公服속에 帖裏의 着用을 규정하고 있다.

憲宗13년에는 判府事 權敦仁曰 “陵行時 “戎服을 着用하였다”하였고 高宗27에는 “翼宗妃가 昇遐하니 陵行時 服色을 布帖裏로 定하고 文·武官도 여기에 따르도록 하였다”하였으며 光海君 2년에는 “侍衛士 및 衆官以下の 器服에 對하여

11) 成倪의 二人著 「樂學軌範」 卷 9 蠶祭服條 防衣蠶祭弓矢舞干戚舞工人所着以紅綿布青綿布爲之裏用黃布.

12) 金東旭, 高福男 前掲書 p. 19

13) 崔南善, 「朝鮮常識」 風俗篇, 서울, 東明社, 1948, p. 128

戎服을 입되 다 玉色을 使用한다”하였다 또 純祖 7년에는 禪祭時 侍衛將士의 祭服으로 「禮曹節目」에 의거하여 黑帖裏으로 갈아 입어야 한다”라고 記錄되어 있다. 또한 帖裏는 壽衣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燃藜室記述」¹⁴⁾에 許曄의 庶曾孫 興孫이 曾祖父 移葬할 때 帖裏가 사용되었으며 또한 出土된 數點의 帖裏이 壽衣로 發掘된 것으로 알 수 있다.

또 「世宗莊憲大王實錄」¹⁵⁾에서는 殮襲을 할 때 襲을 설치하는데도 사용되었는데 王은 大帶一袞 龍袍一紵絲襪一帖裏一次羅圓領一襪襪一帖裏로 되어 있다.

위의 記錄을 보면 帖裏는 壬亂時에는 文·武官의 公服이 되고 壬亂後에는 公服속에 입는 中衣로 使用되고 士庶人에게는 燕居服, 武弁에게는 王이 幸次에 隨行할 때나 外國使臣으로 파견될 때 그리고 器服과 禪祭時 殮襲時에도 널리 着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

C. 色

元에서는 一色衣라하여 集會時 統治者와 爵位를 갖고 있는 사람은 同一色의 비단 質孫을 입었다고 한다…… 高級大官은 紅色이었고 平民一般은 暗色 紵絲만 허용했다. 또 貞元年 禁令中에는 明柳芳綠, 紅白閃色, 迎霜合, 鷄冠紅, 胭脂紅 六種 色은 사용하지 못했다는 기록이¹⁶⁾ 있고 또 元史 卷79 輿服誌에 紅質孫 緋錦質孫, 紅錦質孫 靑錦質孫의 記錄이 있고……紫色 주름을 든 瓣線襪子를 입고¹⁷⁾라고 되어 있으나 高麗時代에 입은 帖裏의 色은 記錄이 없어 알 수 없다.

朝鮮初에는 雅靑色으로 추측되며 端宗에서 成宗까지 雜色으로 입다가 燕山君代에 와서 처음으로 色에 대한 規制가 있었고 宣祖代에는 公服으로 堂上은 靑色堂下는 黑色이나 淡靑色으로 區別을 두기 시작하다. 英祖代에 와서 다시 堂上은 藍色 堂下는 靑玄色으로 改正되고 郊外 勳駕時에는 紅色으로 하다 純祖代에 조금 달리 했으나 國末까지 그대로 使用되었다 생각된다.

朝鮮王朝實錄을 보면 世宗19년에 “大小侍衛軍

士가……甲옷을 입고 侍衛할 때의 속옷은 모두 雅靑色을 쓰소서”함은 甲옷속의 中衣로 帖裏라 보아 侍衛軍士는 雅靑色의 貼裏를 입었다고 보나 世宗26年 明皇帝로부터 黑綠暗花貼裏 鷲哥錄花貼裏 柳綠素貼裏를 下賜物로 받은 것으로 보아 王은 綠色系統의 貼裏를 입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端宗 1년에는 使臣에게 白綿布帖裏 草綠紵帖裏 稚靑帖裏를 下賜한 記錄이 있고 世祖는 鴨頭綠紵帖裏 灰色紵帖裏 藍段子帖裏 朱黃段子帖裏 柳靑紵帖裏를 下賜하였으며 中國使臣에게는 大紅紵帖裏 白苧布帖裏 黑麻布帖裏 灰色紵袂帖裏를 下賜하고 또 左議政 韓確의 家童에게 柳靑紵袂帖裏 黑麻布帖裏 白苧布帖裏를 내린 事實로 帖裏 色에 對한 規制가 없었던 것 같다.

成宗 1년에는 明의 使臣과 두 어린이에게 綿布單帖裏 苧布帖裏 紅綿布襦帖裏 灰色綿帖裏를 내렸고 金質과 裴孟厚等에게 匹緞襦帖裏 紵襦帖裏와 王이 입던 紫紵帖裏 紅綿布麻帖裏 綠紵襦帖裏를 下賜한 事實로 이때까지 多樣한 色의 帖裏를 입은 것 같다.

그러나 燕山君 1年 “무릇 宴享 및 모든 거동에 堂上官은……搭胡·帖裏로는 草綠 藍·柳靑段子를 쓰며……”라는 色의 規制가 처음 있었으나 同王 11年 承旨 姜渾에게 大紅紗帖裏를 내린 것은 上記 教旨가 그대로 실행되지 못한 것 같다.

中宗 33년에는 “世子の 服色이 祖宗朝에 있어서는 알지 못하겠으나 近來에 와서는 언제나 戎服을 입고 色도 雅靑色을 사용하는데……草綠은 宰相들이 모두 그 服色을 입으니 郊外 같은 데는 여러 사람이 보는 곳이라서 그 服色을 달리 할 수 없다 하니 도로 雜靑色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로 보아 世子の 帖裏는 中宗代에 와서는 雅靑色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宣祖29년에는 “壬亂을 겪은 뒤로 衣冠이 없어져서 조정 行렬이 다 着笠과 戎服이다. 그런데 다만 그 服色이 그 뜻에 맞는대로 사용해서 斑斕한 異色은 다만 보는 것만 미안한 것이 아니고 中國사람들은 平時에 입는 常服에도 間色을 입음을 비웃을

14) 李肯翊, 「燃藜室記述」別集 13, 서울: 고전국역총서, 1976

15) 「世宗莊憲大王實錄」五禮儀 凶禮儀式

16) 前掲書, 沈從文編著 p. 388

17) 元史 卷79 輿服誌 p. 1052, p. 1035

관인데 더구나 이와같이 斑爛한 色에 있어서라. 그리고 紫色 黃色에 대하여는 中國에서 禁한 것이니 그것으로 表衣를 만드는 것은 더욱 부당하다. 이제 마땅히 賊을 평정하고 冠帶를 갖출 동안에 한하여 堂上은 平時에 사용하는 藍色을 따르고 堂下는 布(布子)에 黑色을 물들여 쓰되 紫色과 黃色은 일체 禁하라 만약 黑을 물들이기가 쉽지 않으면 靑色을 반쯤 물들여 쓰는 것이 마땅할 듯 하다”라는 記錄으로 間色¹⁸⁾을 많이 입었던 것 같으나 上下를 區別하기 爲해 처음으로 色에 대한 規制가 내려져 堂上은 靑色 堂下는 黑色이나 淡靑色을 입도록 한 것을 알 수 있다.

英祖때 편찬된 續大典¹⁹⁾에는 “堂上官은 藍帖裏에 紫笠을 쓰고 堂上官은 靑玄色帖裏에 黑笠을 쓰며 郊外 動駕時에는 上下 모두 紅色이 着用 되었다”하고 同王36年 “王은 陵에 謁見 할 때 雅靑沙 戎衣와 紅衣를 着用하여 君臣을 달리 하였다”함은 百官과 王의 服色이 달리 着用하였다고 본다. 또 色에 대하여 正祖10年에는 “服色을 着用키로 制度를 정한다면 帖裏와 朱笠의 服色은 달리 사용할 것이 없을 것이니 일체 영영 改革하게 한 다음 비로소 한 사람이 두 가지를 갖추는 弊端을 없앨 수 있사오나 帖裏에 이르러서는 武臣들이 平常服으로 입는 것이며 道臣이 관아를 시찰할 때 입는 色이오니 예전대로 입으라 許容한 것이 마땅할 듯 합니다.……宗朝에 거동할 때에 百官의 服色은 無揚黑團領으로 論議했으나 侍衛 服色은 아직 決定하지 못했는데……禮曹로 하여금 上告하여 決定해서 보고하라……대개 帖裏는 堂下官의 吉服이고 또 결으로 참조할 것이 있으니 大喪의 禫日에 임금은 黑團領을 입고 侍衛 將士가 靑帖裏를 着用하며 祭祀가 끝나기를 기다려 환궁해서는 袞袍를 갈아 입고 將士는 紋緞 帖裏를 사용해서……”로 보아 계속해서 英祖代의 服色을 입었다고 생각한다.

純祖5年 “大駕를 隨行하는 大將의 服色은……白笠에 白天翼을 着用한다고 되어 있사옵고……” 純祖7年 “孝安殿에 禫祭 할 때에 임금께서 玄衿를 갈아 입으신 뒤에는 侍衛하는 將士는 마땅히 禮曹節目에 依據 黑帖裏으로 갈아 입어야 한

다. 그러나 무술년 등록에서 相考해 보면 帖裏은 이미 靑色이고 常時에 堂下가 이 靑色을 입으니 雅靑色을 갈아 입은 다음에 黑色을 해야 한다고 말 할 필요가 없이 禫祭 때에는 그대로 靑帖裏를 입고 祭가 끝나고 純吉服을 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特敎를 따라 舉行하였읍니다.” 純祖15年 “將臣이하의 服色은 무릇 侍衛하고 進見할 때에는 黑笠에 笠飾을 제거하고 淺淡天翼과 黑帶로 마련하면서 거동하되 動駕 하실 때의 陣上 軍領도 물론 그대로 하였읍니다.” 하였고 「增補 文獻備考」²⁰⁾에는 純祖34年 “武臣의 便服 帖裏는 일찌기 闔師 以上을 지낸 者라야 비로서 紗緞 雜色을 입게 하고 防禦使 以下는 일체 금단하며 軍服은 陵行때에 文蔭武 堂下官의 紅帖裏로 紅袍를 병통하는 예에 의하여 이제부터는 靑紵帖裏으로 바꾸어 쓸 것.” 하였다 또 憲宗8年에는 “거동 하실 때의 堂下官의 紅色帖裏는 한갓 物彩의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요 실은 軍容의 重大함에 매였는데 年前 靑色으로 병통한 것은 비록 節約 생비하는 뜻에서 나왔고 지금 特敎로 詢問하는 것은 실로 舊規를 준수하려는 聖念에

王	着用者 및 色
世宗	侍衛軍士: 雅靑, 王: 黑綠暗花, 鷲哥綠花柳靑素
端宗	世子: 藍段子, 朱黃段子, 柳靑紵, 鴨頭綠灰色, 使臣: 白綿布, 草綠紵, 雅靑
世祖	使臣: 鴨頭綠紵, 灰色, 藍段子, 朱黃段子柳靑紵, 家童: 柳靑紵袂, 黑麻布, 白苧布
成宗	王: 紫色, 使臣: 綿布段, 苧布, 匹段襦, 紵襦, 家童: 紅綿布襦, 灰色綿布襦
燕山君	堂上官: 草綠藍, 柳靑段子
中宗	世子, 宰相: 雅靑
宣祖	堂上官: 靑色, 堂下官: 黑色, 淡靑色
英祖	堂上官: 藍色, 堂下官: 靑玄色, 交外動駕時: 紅色
純祖	闔師以上: 雜色 堂下官: 靑色
憲宗	堂上官: 藍色, 堂下官: 靑玄色 交外動駕時: 紅色

18) 赤, 黃, 靑, 白, 黑의 五色中에 어느 두 가지 이상의 빛을 혼합한 빛 곧 綠, 紅, 碧, 紫, 靑黃의 다섯 빛

19) 「續大典」, 京城: 朝鮮總督府 中樞院 10年, 1935

20) 「增補文獻備考」 서울: 東國文化史 古典刊行會, 1971

서 나온 것이나 臣의 뜻인즉 堂下官이 郊外 거동을 시위할 때에는 다시 紅色 帖裏로 前例에 遵行하는 것이 마땅함을 얻을 듯 합니다 하니 윤희하다”라 하였다.

以上の 記錄으로 國末까지 堂上官에는 藍帖裏 堂下官에는 靑玄色 帖裏이 입혀지고 動駕時에는 紅色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王朝別 帖裏의 色을 圖表化하면 앞의 도표와 같다.

D. 材 料

帖裏를 만드는 옷감에 대한 規制는 多様な 色으로 입었던 世祖代에 처음 나오는데 「經國大典」에는 옷감의 升(升)¹⁷⁾에 대한 規定으로 “士族의 衣服은 帖裏 및 裳은 13幅을 넘지 못하며 庶人의 衣服은 8·9升의 浬으로 하되 帖裏 및 裳은 12幅으로 한다.

正祖17년에는 朝臣들의 服色制度로 成宗朝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絲·紬 두 가지로 堂上과 堂下의 服色으로 하여 그것으로 等位의 절도를 두었습니다.” 하였고 成宗 3年正月에 다시 奢侈 禁止節目에서도 옷감의 升과 幅에 대하여 또 다시 規制를 내리고 同王 3년에는 士族衣服의 升數 制限을 廢止 시킨다.

成宗朝까지는 苧, 麻, 綿, 紬, 緞이 帖裏의 材料로 쓰이고 있으나 燕山君代에 와서 大紅紗 帖裏으로 “紗”를 帖裏으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中宗 11년에는 紗羅綾段의 使用은 일체 公宴 및 戎服 차림으로 侍衛할 때나 宗宰 장수의 겉옷, 士族 婦女들의 겉옷 外에는 다시 사용하지 말고……” 하였고 中宗 33년에는 “本國의 制度에 堂上官에게 紗羅綾段을 着用하도록 허락한 것은 堂下官과 區別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였으니 帖裏의 奢侈는 極에 달하였음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正祖20年 將校軍服에 大緞 甲紗등 濫用하는 弊端이 있어 法令으로 이를 禁하게 하고 대신 苧布 三升等屬으로 軍服을 만들도록 訓練大將 李柱國에게 命令하였다 하였으나 當時 軍間

의 服飾이 갈수록 사치해져서 材用이 결핍되고 百姓이 困窮하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儉素를 밝히는 德을 世代에 傳치고자 임금님이 一身上으로부터 一體 儉約으로 先務를 삼아서 奢侈風潮를 버릴 것을 論議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同王17年 絲紬의 階品을 따라 定하던 法을 모방하여 堂上에게는 紋緞紗羅의 等속을 입도록 許容하고 堂下官은 近侍 以外는 다 모시 苧(苧紬) 및 3金을 입게 하여 그것으로 貴賤을 分別하자는 上疏를 올렸으나 또 다시 純祖12년에 “紗羅綾緞의 禁令을 내리도록 거듭 주청하니……”라는 記錄이 있으니 잘 移行이 되지 못한 것 같다.

E. 形 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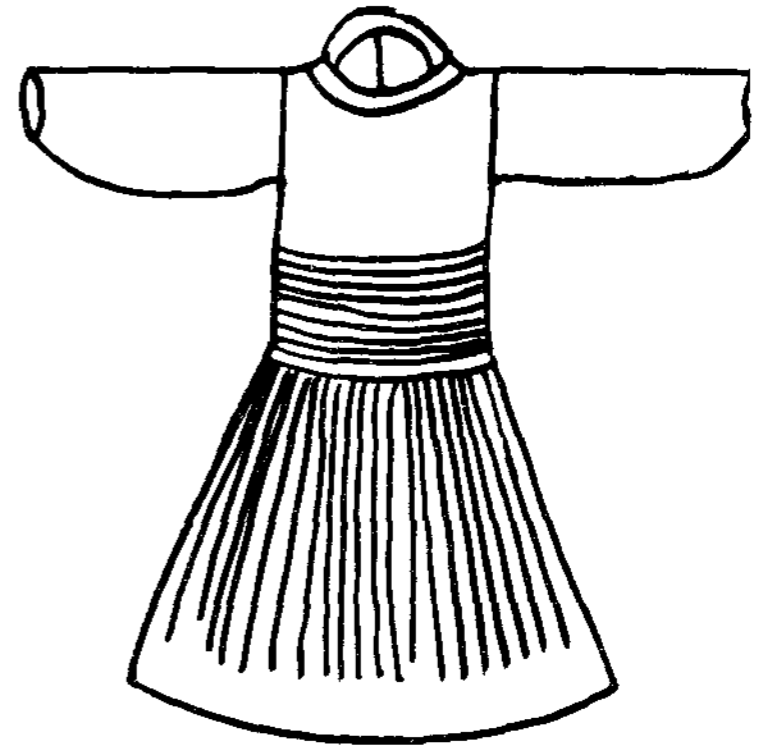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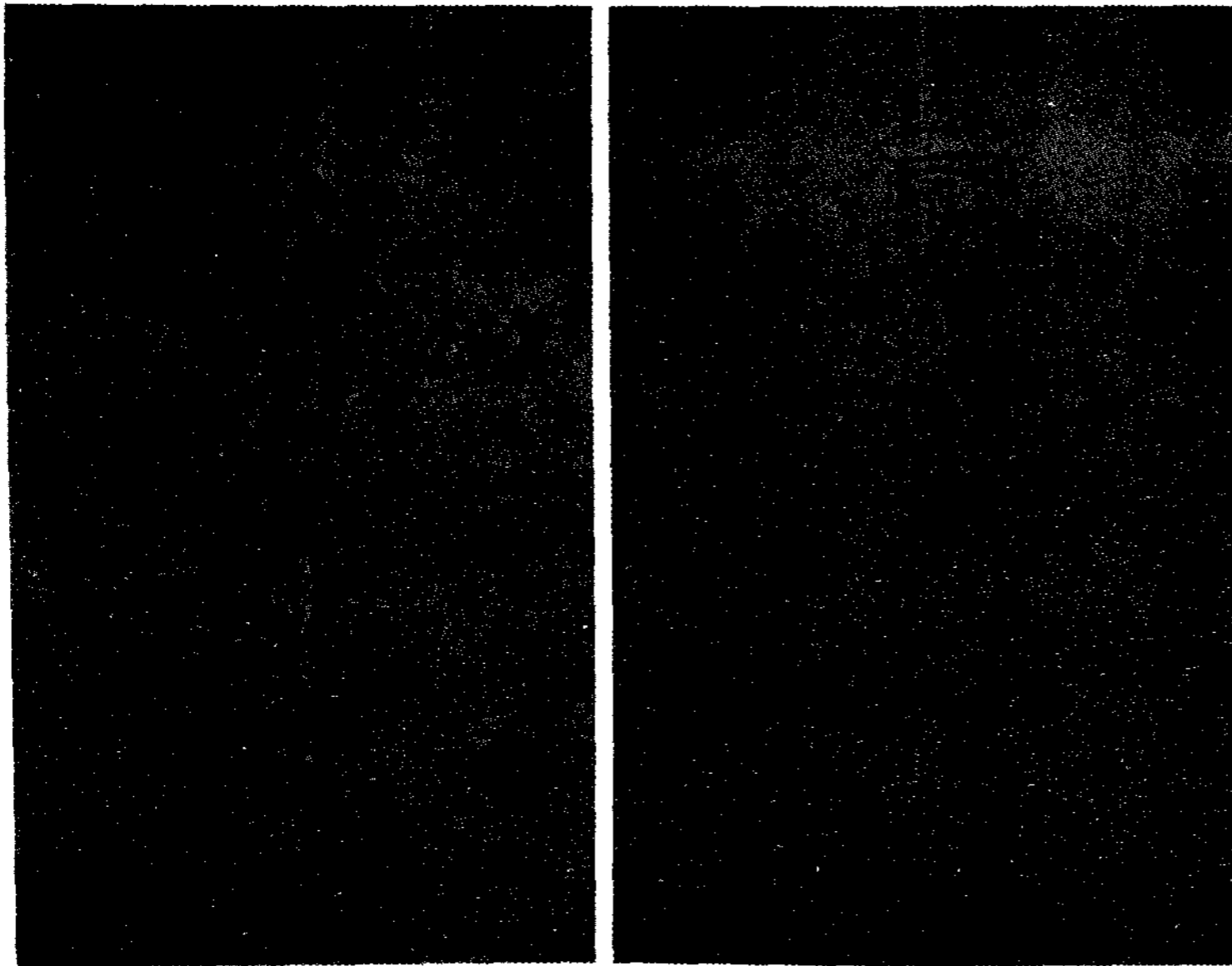
元史 與服誌에 記載된 辮線襖子의 制는 소매를 좁히고 허리部分은 잔주름을 주었으며²¹⁾ 辮線襖子를 입을 때는 金으로 봉황을 새긴 것을 幙頭에 꿸고 紫色 잔주름을 둔 辮線襖를 입고 金束帶를 띠고 烏靴를 신었다²²⁾고 記錄되어 있는데 사진〈2와 3〉에서 볼 수 있고 明代는 〈사진 4〉와 〈5〉에서 볼 수 있는데 것이 團領과 直領 2가지가 보인다. 우리나라는 安珣의 肖像畫나 악학 硯譜에 나오는 單帖裏와 世宗代의 直領腋注音帖裏로 처음부터 直領을 입은 것으로 생각되며 世祖代의 藍腰線袂帖裏는 明代의 要線襖子로 추측된다. 것의 모양으로 忠北大 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는 順天 金氏(1590년대)의 帖裏는 二重의 칼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이 특이 하다.²³⁾(도표 참조) 그러나 우리나라의 帖裏의 形態는 대체로 上衣는 直領右襟이고 고름으로 여미게 되어 있고 소매는 점차 넓어져 두리 소매였으며 치마는 주름을 잡아 허리에서 연결된 上衣下裳式이다. 넓은 소매에 대하여 여러차례 論議와 禁令이 있었으니 宣祖 修正實錄 7년에 소매 넓이는 모두 한 자인데 소매부리는 文官의 것은 아홉치이고 武官의 것은 겨우 주먹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널리 八道에 頒布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고쳐 나가게 한다면 衣冠制度를 다 中國에 따르자는 말이

17) 升: 모시 삼 무명의 실에 升을 사용하여 실의 굵고 가늘기에 따라 升이 높아지면서 정해지는데 모시 10올을 1모라 하고 8모가 1升이 되고 삼 9升이면 모시를 마다하며 입고 무명은 지금에 와서는 12升이 고작 上品이다.

21) 元史 卷78 辮線襖制, 如窄袖衫腰作辮線細摺

22) 元史 卷79 皆弓角金鳳翅幙頭紫細摺襖塗金束帶烏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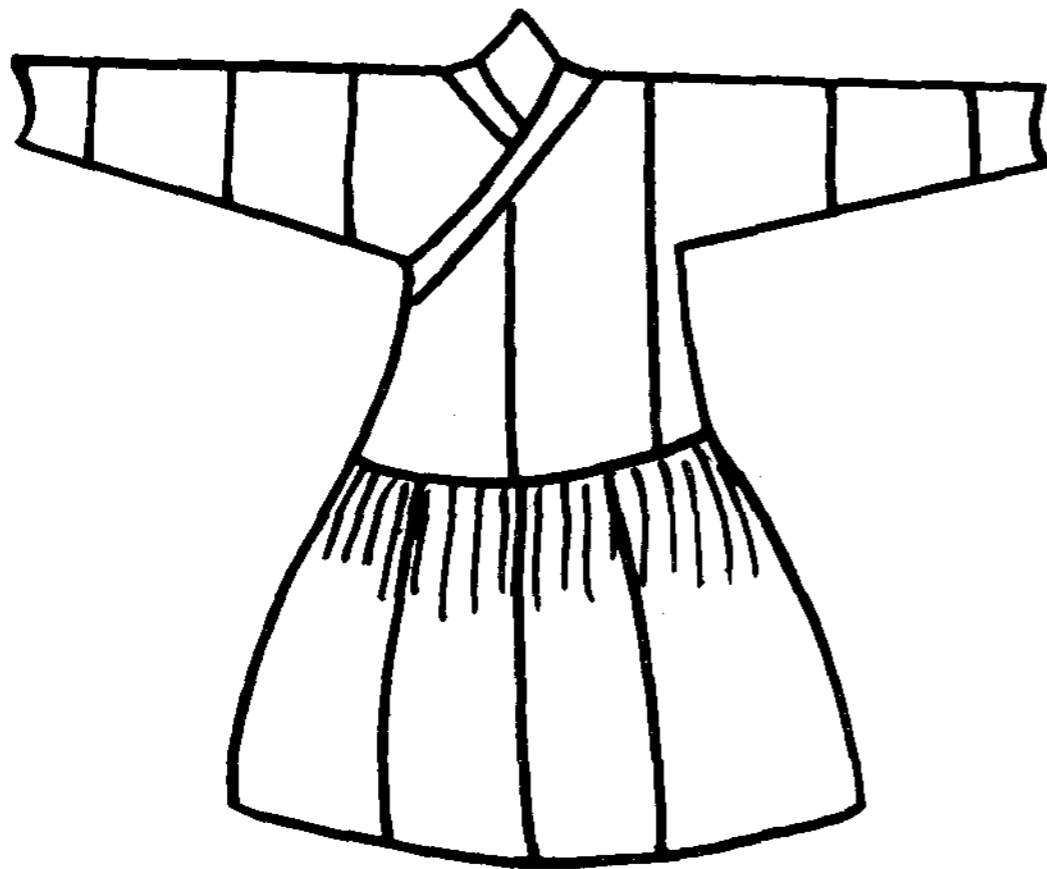
23) 「順天金氏 壬亂前衣服 및 簡札」重要民俗資料調查報告書, 1979



〈사진 3〉 元の 官吏
(元至治刻本挿圖)中國服飾研究p. 367

〈사진 4〉 明의 皇帝
中國服飾研究 p. 425

〈사진 5〉 明의 帖裏
(三才圖會에서 발췌)



〈사진 6〉 單帖裏(防衣) 樂學軌範

거의 실제 말이 될것이다”라는 禁令을 내렸고 또 同王 30년에는 王의 戎服制에 대하여 論議가 있었었는데 “.....中國사람들이 빈번히 우리의 寬袍 大袖를 조소하여 前後하여 詰責한 일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朝臣들은 戎衣의 소매가 넓은 것은 다 고쳐야 할 것이다”하였으며 孝宗 8년에는 王이 長陵에 幸行할제 소매 넓은 軍服을 보고 “이것이 어찌 「戎嚴之服」이라 할 수 있느냐”하여 곧 그 制度를 고치게 했으며 인조 26年에도 “軍人들로 하여금 옷소매를 좁히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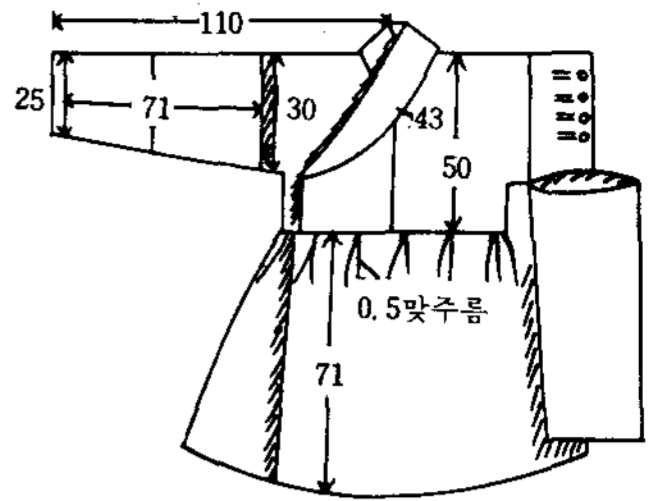
좋겠다”하였다. 그러나 소매 폭은 계속 넓어져 英祖代에 편찬된 增補文獻備考나 續大典에는 “袖長은 손을 지나 다시 팔목에 닿을 만하게 하고 소매통의 넓이는 1尺 袖口는 7寸으로 하여 첩리도 이와 같이 하고.....”라했으며 正祖17년에는 皂隸무리들의 帖裏소매까지도 그들을 따라 넓어져 거의 全幅의 비단을 사용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지나친 낭비가 민망할 정도입니다.....皂隸들의 帖裏를 힘써 짧고 좁게 만들도록 한다면 아마도 옛 제도를 回復하고 消費를 줄이는 實效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 넓이가 1尺2寸이 되는가 하면 어떤 것은3~4寸이 되니.....”라 하였으니 가히 상상할 수 있다. 高宗 10年에도 “우리나라의 帖裏와 絲笠은 동작을 구속하며.....”라는 기록으로 朝鮮末까지 넓고 길었음을 示唆해 준다. 圖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遺物中에는 소매 한 쪽이나 양쪽에 단추를 달아 떼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活動面에서라면 한 쪽만 된 것이 있어 남득이 가지 않고 “有事時에 戎服으로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方法이며 때에 따라서는 소매를 떼어 찢어서 붕대로 사용하기도 한다”²⁴⁾하였다.

24) 石宙善 「韓國服飾史」, 서울 : 寶晉齋, 1978, p. 103

帖 裏 의 치 수

文化財管理局 重要民俗資料 단위 : : cm

年 代(王)	着 用 者	保 管 場 所 (出 土 地)	色 材 料 形 態	特 徵	치 수
1590年代 (宣祖)	順天金氏	忠北大學博物館 (清原郡 北一面 外南里)	白細紵홀칠릭	壽衣가 아닌 實物이며 깃 이 二重 깃으 로 된 칼깃	
上 同	上 同	上 同	褐色 明紵겉 누비 帖裏	이중깃으로 된 칼깃과 겨드 랑에 무있음	
1567~1596	金 德 齡	光州忠社祠 (全南光州市)	白紵 홀 칠릭	窄袖 직배래 양쪽 소매 펴 수 있음	
1590年代 (宣祖)	長興任氏	光州市立博物館 (全南光州市)	白綿 홀 칠릭	女性の 帖裏 左側 소매 펴 수 있음	
1634~1704 (肅宗)	金 德 遠	서울 永登浦區 禾谷洞 (서울永登浦區)	茶割色 雲紋緞帖裏	허리아래 솔 기가 전부 터 져 있음	

年代(王)	着用者	保(出土地)管者	色材料形態	特 徵	치 수
?	유물번호 2611	昌 德 宮	靑 色 雲 紋 숙고사 帖裏	현대두루마기와 흡사하며 흰동정 넓은 두리소매 좌 측소매 단추 로 멜수 있음	

소매와 함께 치마 길이에 대해서도 規制가 있었으니 宣祖 修正實錄 7년에는 “文官의 옷은 땅과의 거리가 한치였고 武官의 옷은 땅과의 거리가 다섯치며……”라는 禁令을 내렸고 增補文獻備考나 續大典에는 表衣는 大小人員은 文·武官識을 물론하고 앞은 地上에서 3寸 떨어지게 하며 뒤는 2寸 떨어지게 하였다…… 帖裏도 이와 같이 하고……”라 함은 치마의 길이가 매우 길었음을 알게 된다. 「燃藜室記述」에는 “許曄의 庶會孫 興善이 말하기를 曾祖父 遷葬 改棺時 帖裏 襲用한 것을 보았는데 上衣는 크고 길며 下衣는 크고 짧은 것이 令人의 着用과 다르다” 한 것은 文明姬의 帖裏에 關한 研究에서 下裳의 길이는 後期로 갈수록 점점 길어지고 반면에 上衣는 짧아진다²⁵⁾와 一致된다.

英祖代에 쓴 「湛軒書」²⁶⁾에 육起潛 曰 “형의 옷은 모두 터져 있는데 이것도 明나라의 服制임니까 하며 내가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戎服이며 確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官吏의 朝服이나 선비의 道袍는 明나라 明制를 踏襲하고 있습니다”라 하였다 치마 폭이 전부 트인 옷이 遺物로 있으니 肅宗代의 金德遠氏의 帖裏와²⁷⁾ 梨花大學 家政大學에 所藏되어 있는 李冕의 帖裏²⁸⁾가 이와 같이 치마 폭이 터져 있다. 帖裏를 構成面으로 볼 때 單衣(홀옷)와 袂衣(겹옷)와 襦衣(솔을 둔 옷)으로 되어 있고 帖裏를 입고 正裝한 모습은 <사진 7>에서 볼 수 있다.²⁹⁾

文化財管理局에서 重要民俗資料로 指定한 帖



<사진 7> 國學圖鑑에서 발췌

裏의 形態 材料 色 및 特徵을 圖表로 그리면 앞의 도표와 같다.

V. 結 論

元에서는 王 이하 平民에 이르기까지 上下 通用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世宗朝에 王 이하 平民 賤隷에 이르기까지 입은 것으로 보아 高麗時代

25) 文明姬 「帖裏에 關한 研究」 梨大大學院 碩士論文, 1980, p. 68

26) 「重要民俗資料」 服飾, 第75號, 文化財管理局, p. 89

27) 重要民俗資料報告書 第75號, p. 88

28) 文明姬, 前掲書, p. 48

29) 李勳鍾 「국학도감」 서울: 一潮閣, 1968

에도 上流層에서는 많이 입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朝鮮朝에 와서 帖裏는 武人의 戎服으로 王, 王世子의 便服, 士大夫·庶人의 燕居服으로 또는 自隸의 禮裝으로 입고 壬丙 兩亂에는 文·武百官의 公服으로 입게 되었으며 樂人, 舞人 巫人 女人 어린이 壽衣에 이르기까지 입혀졌다. 帖裏의 形態는 허리에서 上衣와 下衣가 연결되어 있는 옷으로 上衣는 直領에 右襟이며 두리소매이고 고름으로 여미게 되어 있으며 下衣는 주름 잡은 치마를 붙인 上衣下裳式으로 되어 풍성한 形態가 品位를 자아낼 수 있고 文臣과 같아 지려는 心理的인 面과 간편함 때문에 많이 입었던 帖裏는 소매와 치마의 길이가 넓고 길어져서 여러 王朝에 걸쳐 規制하였으나 實効를 거두지

못하였다. 色에 있어서 처음은 暗靑色으로 사료되나 점차 雜色으로 입다가 等位를 두기 爲해 色의 規制를 여러 王朝에 걸쳐 論議되나 英祖代에 가서부터 堂上官은 藍帖裏, 堂下官은 靑玄色 帖裏 郊外 勳駕時에는 紅色帖裏를 着用하였다. 帖裏의 材料는 綿, 麻, 紬, 緞, 紗 羅 등이 사용되었는데 너무 사치가 심해져서 堂上官은 紋緞紗羅를 입게 하고 堂下官은 모시 인주를 입게 하였으나 잘 시행되지 못하였다. 帖裏의 形態는 單(홀), 袂(겹), 襦(숨을 둔 것)帖裏이 있다. 이와같이 上下 通用되던 帖裏는 高宗末 西區式服飾制度가 勅令으로 宣布됨으로 그 자취를 감추게 된다.

參 考 文 獻

- 「經國大典」 부산: 부산일보사발행, 1965
 金東旭, 「李朝前期 服飾研究」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9
 " , 「韓國服飾史」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9
 金東旭, 高福男, 「出土 朝鮮時代 遺衣의 服飾史的 研究」 服飾學會誌二號, 1978
 「大典通編」 서울: 법제처, 1963
 「大典會通」 京城: 朝鮮總督府, 中樞院, 昭和14年, 1939
 「世宗莊憲大王實錄」 五禮儀
 「續大典」 京城: 朝鮮總督府 中樞院, 1935
 孫敬子, 金英淑共著, 「韓國服飾史資料選集」 教文社, 1982
 石宙善 「韓國服飾史」 서울 寶晉齋 1978
 「樂學軌範」 卷 9
 柳馨遠 「磻溪隨錄」: 東國文化史, 1958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 서울: 梨花大學校 出版部, 1975
 柳洪烈 「韓國史大辭典」, 서울: 교육출판공사, 1979
 劉頌玉, 「出土服飾·男服」 韓國의 服飾, 서울: 韓國文化財保護協會, 1982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考」, 서울 東國文化社 影印本, 1959
 李肯翊 「국역燃藜室記述別集」, 서울: 高宗國역총서, 1976
 李勳鍾 「國學圖鑑」 서울: 一潮閣, 1968
 「朝鮮王朝實錄」 全49卷, 國史編纂委員會 (編), 서울: 探究堂, 影印本, 1973
 「增補文獻備考」, 서울: 東國文化社, 古典刊行會, 1971
 「韓國肖像畫」 國立博物館 1979
 文化財管理局 「竹山 朴信龍將軍衣帶」 重要民俗資料報告書, 第79號, 서울: 文化財管理局, 1979
 文化財管理局 「重要民俗資料(服飾)」 重要民俗資料報告書, 第75號, 서울: 文化財管理局, 1979
 文化財管理局, 「經山 鄭元容大監의 衣服」 重要民俗資料報告書 第18號, 서울: 文化財管理局, 1969
 順天金氏 壬亂前衣服 및 簡札(忠北大所藏) 重要民俗資料調查報告書, 1979
 文明姬 「帖裏에 관한 研究」 梨花大學院, 碩士論文, 1980
 정혜영 「李朝時代의 軍服에 관하여 一具軍服을 中心으로」 梨花大學碩士論文, 1980

「25史 元史Ⅱ」新文豐出版公社

「25史 明史Ⅰ」新文豐出版公社

「中國古代服飾研究」沈從文編著 商務印書館。

王圻「三才圖會」四 臺北：成文出版社 影印本，1970

王宇清「中國服裝史綱」，臺北：中華大典編印會，中華民國56年